

IBK저축은행 「ISA 정기적금」 상품설명서

이 설명서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**참고자료**이며, **실제 계약은 ISA 정기적금 특약, 적립식예금약관 및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**됩니다.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,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증서 등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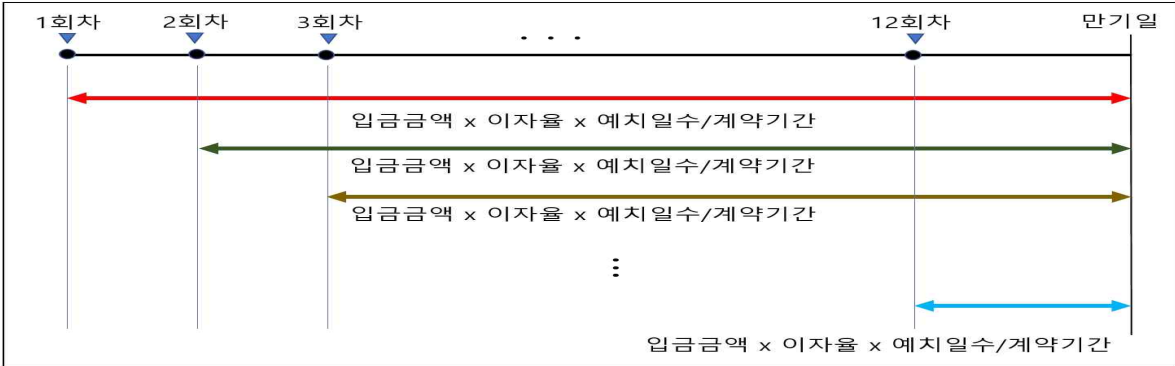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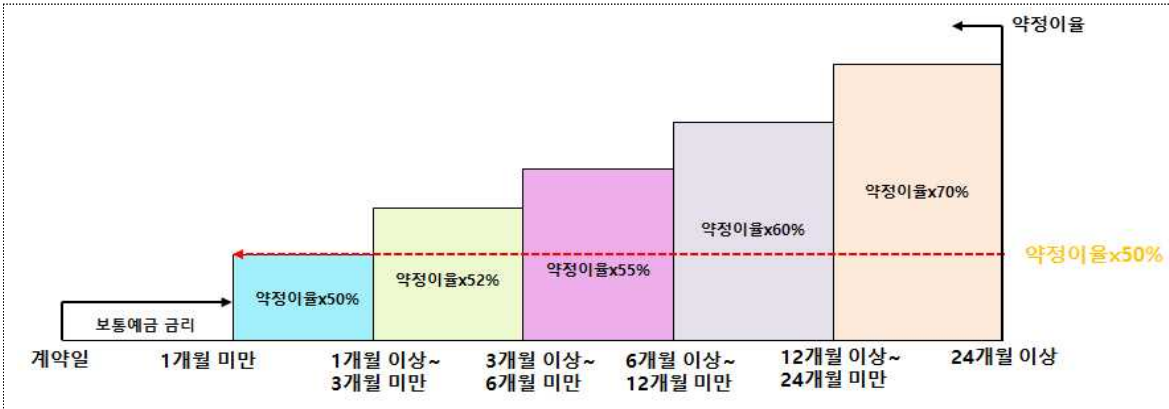
1 상품 개요 및 특징

- **상 품 명** : 「ISA 정기적금」
- **상품특징** :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에 편입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위한 전용 정기적금 상품

2 거래 조건

☞ 금리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이며, **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약관, 증서 등 계약서류에 표시됩니다.**

구 분	내 용						
가입대상	■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를 취급하는 금융회사						
가입금액	■ 최저 1만원 이상						
계약기간	■ 12개월 이내에서 저축은행과 고객이 별도로 정한 기간						
적용이율 등 (세전, 연%)	■ 신규일 현재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계약기간별 차등 이율 적용 ■ 매월 계약일 상당일 월납입식(상당일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) ■ 저축금 납입일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저축금 납입일로 적용함(이 경우 지연일수 미포함) (기준일 : 2025.09.01.) <table><tr><th>계약기간</th><th>고시금리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>12개월</td><td>3.00</td><td>세전</td></tr></table>	계약기간	고시금리	비고	12개월	3.00	세전
계약기간	고시금리	비고					
12개월	3.00	세전					
이자지급 방법 등	■ 만기일시지급식 ■ 총 선납일수가 총 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 지급 ■ 총 지연일수가 총선납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①총 지연일수에서 총 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저축은행에서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 지급 또는 ②순 지연일수를 계약기간 납입 총 횟수로 나눈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이 이연됨						
선납이자 및 만기일 이연	■ 선납이자는 지급하지 않으며, 월부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지급이자에서 지연이자를 차감하고 만기일에 지급받거나, 이연일수만큼 만기일이 이연되어 늦춰집니다. ※ 지연이자 = 월부금 × (총지연일수 - 선납일수) / 365 × 입금지연이율(=약정이율+연2%) ※ 이연일수 = (총지연일수 - 총선납일수) / 계약회차						

구분	내용																		
이자계산방법	■ 입금금액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합계하여 지급(원미만 절사) [입금건별 이자계산 산식] $\text{입금금액} \times \text{약정이율} \times \text{일수(입금일} \sim \text{만기일 전일)} / 365$ 																		
만기일 경과후의 납입제한	■ 만기일에 모든 회차의 저축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계좌로서 만기일 경과 후 계속 저축금 납입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납입 총 횟수의 1/2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하여 계약일로부터 기산하여 당초 계약기간의 1.5배 기간 범위 내에서 납입 가능함 ■ 이 경우 전회의 적금납입이 완료된 때에 '이자지급방법 등' 란에 기재된 ②에 따라 만기일이 이연됨(단, 이연된 만기일이 최종저축금 납입일 이전에 도래하는 때에는 최종 납입일을 만기일로 함)																		
일반 중도해지 사유	■ 계약기간 전에 해당 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■ 만기일까지 계약기간 납입 총횟수의 1/2에 미달하는 경우 ■ 만기이연된 1.5배기간까지 미납금이 남아 있는 경우 ■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계좌만기일까지 계약기간 납입 총 횟수의 2/3에 미달한 경우																		
중도해지이율 (세전, 연%)	• 1개월 미만 : 계약일의 보통예금 이율 범위 내 적용 • 1개월 이상 : 약정이율 × 차등률 [단, 최저금리 : 약정이율 × 50%] <table><thead><tr><th>예치기간</th><th>이 율</th><th>비 고</th></tr></thead><tbody><tr><td>1개월 미만</td><td>연 0.4%</td><td>보통예금 이율</td></tr><tr><td>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</td><td>약정이율 × 50%</td><td rowspan="4">약정이율의 50%로 최저 금리 설정</td></tr><tr><td>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</td><td>약정이율 × 52%</td></tr><tr><td>6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</td><td>약정이율 × 55%</td></tr><tr><td>12개월 이상 ~ 24개월 미만</td><td>약정이율 × 60%</td></tr><tr><td>24개월 이상</td><td>약정이율 × 70%</td><td></td></tr></tbody></table> • 계산방법<예시>  ※ 가입기간이 "1개월 미만"으로 중도해지 시에는 약정이율의 50%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, 위 그림은 중도해지이율을 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것임.	예치기간	이 율	비 고	1개월 미만	연 0.4%	보통예금 이율	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50%	약정이율의 50%로 최저 금리 설정	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52%	6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55%	12개월 이상 ~ 24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60%	24개월 이상	약정이율 × 70%	
예치기간	이 율	비 고																	
1개월 미만	연 0.4%	보통예금 이율																	
1개월 이상 ~ 3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50%	약정이율의 50%로 최저 금리 설정																	
3개월 이상 ~ 6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52%																		
6개월 이상 ~ 12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55%																		
12개월 이상 ~ 24개월 미만	약정이율 × 60%																		
24개월 이상	약정이율 × 70%																		

구분	내용		
특별중도해지 이율 (세전, 연%)	■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계약기간별 이율 적용		
	1년 미만	1년 이상~2년미만	2년 이상~3년 미만
	6개월제 일반정기적금 약정이율	1년제 약정이율	2년제 약정이율
특별중도해지 사유	■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사유 - 가입자 사망, 해외이주 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 : 천재지변, 퇴직, 폐업,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·질병,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·파산 ■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(단, 계약기간 납입 총횟수의 2/3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함) ■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 (단, 계약기간 납입 총횟수의 2/3이상 납입한 계좌에 한함)		
만기후 이율 (세전, 연%)	■ 신규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경과기간 ^{주1)} 별 만기후이율 적용		
	경과기간	만기후 이율	
	1개월 이내 1개월 초과	신규가입일 당시 약정이율과 만기일 현재 고시이율 중 낮은 이율 보통예금이율	
주1) 경과기간 : (해당 시간)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(ex.입금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)			
예금해지시 불이익	■ 만기 전 예금해지시 중도해지이율 적용		
자료열람 요구권	■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,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열람의 목적,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 ■ 저축은행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,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,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. ■ 저축은행은 법령, 제3자의 이익침해,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.		
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사항 등	■ 계좌에 압류^{주1)}, 가압류^{주2)}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 주1) 압류 :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(매매, 양도 등)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,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됨 주2) 가압류 :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 ■ 이 예금은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 제공, 지급정지, 상계 등은 불가 ■ 계좌분할, 계약기간변경, 만기일 앞당김 불가		
	예금자 보호여부	예금보험공사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1억원	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"1억원까지"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

- 이 설명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, 동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약정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,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,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이 예금은 통장이 발급되지 않으며, 세금우대, 생계형(비과세) 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.
- 만기 전 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기간별 특별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,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일반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
- 판매사가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에서 정하는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,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한 경우, 적정하지 않은 금융상품에 대해 부적정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, 금융상품에 대해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한 경우,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불공정영업행위 또는 부당권유행위를 한 경우, 금융소비자는 해당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범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(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) 금융상품 명칭, 법 위반사실을 작성한 계약해지요구서를 포함한 서면등을 제출하여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및 위약금 등 계약해지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.

상품가입 후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시면 판매 금융회사, IBK저축은행 고객센터(1522-7900)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ibksb.co.kr)로 문의하실 수 있고,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히 처리하여 그 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. 또한 당 행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분쟁조정 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